수출관세를 바로 적용하여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방도

정 춘 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해양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여 나가며 나무심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 게 벌려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여나가 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매우 중 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나라의 자원을 적 극 보호하여야 자립적민족경제를 활력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먼 앞날에도 후대 들의 행복한 생활을 담보해줄수 있는 물질 적원천을 가질수 있게 된다.

나라의 자원을 적극 보호하는 문제는 오늘 국제시장에서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자원을 보존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쟁탈전을 치렬하게 벌리고있으며 그 중요한 공간으로 무역을 비롯한 대외경제교류형태들을 리용하고있는 조건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된다.

수출에서 관세부과대상을 바로 정하고 관세률과 관세부과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하는것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수출관세는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량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관세이다. 수출관 세가 부과되는 경우 수출상품의 가격이 높 아지며 결국 수출이 어렵게 된다.

수출관세의 이러한 기능으로부터 수출 국가는 수출을 장려하려는 상품에 대하여 서는 일반적으로 관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원이나 국제 시장에서 그 상품의 가격을 높여야 할 경 우에는 수출관세를 적용한다.

국제시장에서 수출관세라고 할 때 기본

은 자원의 류출을 막기 위한 관세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수출관세의 대부분이 자 원류출을 막기 위하여 적용되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는 금, 은, 철, 마그네사이트를 비롯한 광물자원과 물고기와 운단, 성게, 명란, 생복과 같은 수산자원, 산삼, 인삼, 홍삼과 같은 약초자원이 많다. 이러한 자원들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원료들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밑천들이다.

자원수출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여 자원이 국내생산기업 소들에 돌려짐으로써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그리고 수출관련기업소들이 자원수출보다도 그것을 가공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려고 노력하게 되며 결국 자원은 보호되게 된다.

만일 자원수출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나라의 귀중한 자원들인 금속광물, 비금속광물들과 산림자원, 해양자원들이 경제건설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경공업, 중공업부문들의 원료로 리용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에로 마구 류출될수 있다. 이것은 수출관세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보호수단이며 대외무역에서 수출관세공간을 옳게 리용하여야 주어진 원료자원으로 더 많은 수입을 얻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수출관세를 바로 적용하여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수출관세부과대상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수출판세부과대상은 자원의 품종과 매 장량, 국내에서의 수요과 공급관계, 국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관계, 가공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수출관세부과대상으로는 우선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절실히 요구 되는 원료, 동력자원들이 선정되여야 한다.

원료, 동력은 생산의 필수적요소들이다. 로력이 있고 기계설비가 마련되였다고 하 여도 원료가 없으면 생산을 할수 없고 동 력이 없으면 공장을 돌릴수 없다.

우리가 경제건설을 활력있게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자면 공장, 기업소들에 원 료, 동력이 제대로 보장되여야 한다.

금속,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담보 이다. 금속,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절실히 요구되는 원료, 동력자원은 석탄과 철광석을 비롯한 각종 금속광물들이다.

우리 나라에서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다.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미치는 석탄 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

철정광은 우리 나라 금속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료이다. 국내원료를 가지고 산소열법에 의한 철생 산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자면 무연탄과함께 철정광이 많아야 한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김책제철련합기 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성진제강련 합기업소와 같은 대규모련합기업소들에서 생산하는 철강재생산에 필요한 철정광을 제대로 보장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그 수출을 극력 금지하여야 한다.

수출관세부과대상으로는 또한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금속자재들 과 품위가 보장되지 못한 비금속들이 선정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정에는 많은 금속자재들이 요구된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금속자재들로서는 선철, 강철, 합금철, 환강, 각광을 비롯한 각종 강재들이다. 선철, 강철, 합금철을 비롯한 금속자재들은 자동차. 공작기계를 비롯

한 기계공업과 건설공업 등에 절실히 필요한 자재들이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계들을 원만히 보장하고 건설부 문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자면 금 속자재들의 수출을 금지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자재들의 수출을 허용한다면 많은 금속자재들이 다른 나라에 류출되는것으로 되며 자원보호에 부정적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요구되는 금속자재들을 관세부과대상 으로 선정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품위가 보장되지 못하고 가공도가 낮은 비금속광물가공품의 수출에 대하여서도 관 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것은 자원보호가 그 리용의 효과성과 련관성을 가지기때문 이다.

수출품의 가공도를 높여 단위자원을 가지고 더 많고 질좋은 가공품을 생산하면 그 수출로 얻은 단위외화량에 포함된 원료의 량은 가공도가 낮은 수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즉 같은 원료를 가지고 생산한 가공품들의 수출에서 얻은 수입이 높으면 그것은 곧 자원보호효과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다.

품위가 보장되지 못하고 가공도가 낮은 비금속광물가공품의 수출은 많은 자원을 랑 비하는것으로 되며 따라서 그 수출을 금지 하는것은 자원보호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우리는 품위가 보장되지 못하였거나 낮은 돌, 보석 등 비금속가공품에도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자원리용률을 높이며 극력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출관세부과대상으로는 또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경공업부문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자원들이 선정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들에서 요구되는 자원들로는 식료공업, 방직공업부문들의 생산정상화에 요구되는 각종 밀가루, 사탕가루, 콩 등과 각종 섬유원료들이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씨앗들을 잘 가꾸어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 여 경공업기지들에서 요구되는 원자재들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경공업생산기지들에서 요구되는 원료들의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여야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고 질을 높일수 있다. 방직공업부문들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있는 제품들인 명주옷생산을 늘일수 있도록 누에고치섬유를 제때에 보장해주고 식료공업부문들에서 우리의 명산물인 송이 버섯술과 인삼술, 인삼정액과 같은 식료품들을 생산하자면 원자재가 수출되지 못하도록 수출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방직, 식료공업부문들을 비롯한 경공업부문들에서 요구되는 원자재를 충분 히 보장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을 생산함 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하루빨리 21세기의 요구에 올려세워야 한다.

수출관세를 바로 적용하여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관세률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출관세률은 관세의 효과가 국제시장 에서의 가격변동을 반영하여 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변동되는 국제시장가격수준을 반영하여 관세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자면 관세부 과대상에 따라 기본관세률을 정하고 보충 관세률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기본판세률은 원료의 수출을 금지할수 있는 높은 관세률이고 보충판세률은 기본 판세률이 적용되였지만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료에 대하여 적용하는 판세이 다. 국제시장에서 예상치 않게 가격이 너 무 높아져 기본판세률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수출기업소들이 국내에서의 가격차이를 리용하여 수출할수 없도록 보 충판세률을 적용하여 판세의 효과를 높여 야 한다.

수출관세률은 자원의 종류와 매장량, 국 제시장에서의 수요량과 국내에서의 생산량 을 고려하여 각이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마그네사이트, 흑연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매장량에서 손꼽히면서도 생산량이 많은 자원과 철광석이나 석탄 등 과 같이 국내생산기업소들에서 특별히 수 요량이 많은 자원, 경금속광물들과 같이 국내에서의 수요량에 비하여 생산량이 상 대적으로 적은 각이한 자원이 있다.

우리는 자원수출을 금지하는 원칙을 세우면서 매장량과 수요량을 고려하여 각이한 수준의 관세률을 적용함으로써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출관세를 바로 적용하여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수출관 세부과방법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나라의 자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서 는 수출관세부과대상과 관세률을 옳게 선 정하는것과 함께 부과방법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관세부과방법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하는것은 종량관세와 종가관세의 우단점과 관계된다.

종량관세가 수출상품의 가격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관세라면 종량관세는 수출상품의 량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관세이다. 종가관세는 시장가격의 영향을 받아 적용효과가 달라지지만 종량관세는 가격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량적으로 많은 더미짐의 수출에 대하여서는 적용효과가 크게 된다. 이로부터 수출관세는 시장가격의 변동범위와 원료의 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수출관세부과방법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종가관세를 기본으로 하면서 종량관세를 결합하여 적용하는것이다. 그것은 자원수출에 대하여 종가관세만을 적용하면 관세의 효과를 높일수 없기때

문이다.

자원은 국제시장에서 가격변동이 크며 국제시장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관세를 적 용하여도 국내에서의 수출가격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낮으면 관세의 효과가 낮아져 수 출이 이루어질수 있다. 그러므로 종가관세 를 부과하여 생기는 가격차이는 종량관세 를 적용하여 상쇄하여야 한다. 종량관세를 결합하여 적용할 때 그 기준은 국제시장에 서와 국내에서의 수출가격차이이다.

종량관세의 적용단위도 관세의 효과가 높아질수 있는것으로 선택하여 정해야 한다. 그것은 종량관세가 단위를 어떻게 선정하는 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기때문이다. 자원에는 부피가 크지만 중량이 작은 원료, 크기는 작지만 무게가 나가는 원료, 량적으로 많지만 쓸모있는 광물의 포함량 이 적은 원료 등 각이한 물리화학적특성을 가진것들이 있다. 부피가 작아도 중량이 많이 나가는 광석, 알곡, 세멘트 등과 같 은 더미짐상품에 대하여서는 무게에 따라 관세액을 규정하여야 그 수출이 극력 제한 될수 있다.

우리는 수출관세를 옳게 적용하여 나라 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